

# 기안용지

문류기호 문서번호	인사26-1-171	(전화번호 104)	직장부서 소속 인사과
처리기간	후결		
시행일자	31.12.		
보통년월			
부서 소속 기관	부시장 네무국장 인사과장	4:3	
기안책임자	한동완	(인. 12. 17)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방 신	시 장
제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공고		
(적 1안) 내부 결재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2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고 별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문안 : 별첨 참조			
나. 공고일 : 1981. 12. 21			
다. 대상인원 : 238명			
라. 신청기간 : 1982년 1월 20일부터 1982년 1월 31일까지			
관인			
첨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공고문 1부. 끝.			
(적 2안)			
발송			
수신 제목 등 견	수신처 참조		
557.			

1501-1-8A-강  
1989. 11. 10. 중인

190mm×265mm 2-단인쇄용지 90kg/m<sup>2</sup>  
표. 단. 정(3, 000, 000매 인. 재.)

<p>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2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시행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고,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수당 지급 대상지중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조치할 것.</p>
<p>○ 지시 사항</p>
<p>가. 대상자 :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p>
<p>○ 5급이상 : 1922.1.1 - 1925.12.31. (배정의 경우 1930.12.31.까지 포함)</p>
<p>○ 6급이하 : 1928.1.1 - 1931.12.31. (배정의 경우 1936.12.31.까지 포함)</p>
<p>나. 신청기간 : 1982.1.20 - 1982.1.31.</p>
<p>다. 작성 요령</p>
<p>(1) 근속년수 : 수당 신청 게시일 기준</p>
<p>(2) 정년 일 : 6월만 (당해년도 1.1 - 6.30.까지 출생자) 12월만 (당해년도 7.1 - 12.31.까지 출생자)</p>
<p>(3) 정년 잔여기간 : 명예퇴직 지급 신청 게시일부터 정년일</p>
<p>(4) 퇴직하고자 하는 시기 : 결정통지일부터 30일 이내</p>
<p>(5) 수당 청구액 산출내역</p>
<p>○ 일반퇴직 : 퇴직원 봉급액 × 1/2 × 잔여월수</p>
<p>○ 상병퇴직 : 퇴직원 봉급액 × 1/2 × 지급규정 배수</p>
<p>(6) 정년 잔여기간 계산 : 15일이상은 1월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상병퇴직자는 6일이상은 1년, 6일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p>
<p>(7) 81년 신청대상자 : 81년도 기신청자도 신청서 기재내용 변경으로 재 신청하도록 함.</p>
<p>첨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 부.</p>

수신처 시산하 전기관

(제 3안)

No 305

수신 공보관

발신 : 내부국장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여 1982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공고를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시보에 게재코저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 : 1981. 12. 21

나. 공고문 : 별첨 참조

첨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부. 끝.

공 고 문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382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3조에 의하여 1982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1. 12. 21

서울특별시 시장

1. 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공고일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정년퇴직이전 1년이상 5년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
- 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이  
전 5년초과 10년 이내인 자

2. 수당 지급 대상 인원 : 238명

3. 수당 지급 신청

- 가. 신청기간 : 1982년 1월 20일 - 1982년 1월 31일
- 나. 신청절차 : 수당지급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류를 구비  
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4.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 결정 및 지급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급한다.

5. 수당지급 결정이 효력 상실

수당지급 결정통지를 받은 수당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관내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결정  
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기타 수당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을 참고  
하기 바람. 끝.